

소 장

원 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박진석 김철호 양홍석 곽경란 김소리 이연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98, 3층(서초동, 일신빌딩)

전화: 02-2038-3620 팩스: 02-2038-3621

피 고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서울 중구 통일로 10(남대문로5가)

대표이사 전병일

손해배상(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1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I.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에서 2016. 3. 16. 주식회사 포스코대우로 변경되었음)는 외국상사 대리업, 국내외 자원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미얀마 해역에서 가스전을 개발하여 생산된 천연가스를 육상으로 이송하기 위해 미얀마 께퉼(Kyauk Phyu) 지역에 육상가스터미널 및 제반 시설을 건설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건설한 육상가스터미널 부지에서 토지이용권을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살아오던 주민들입니다.

II.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1. 미얀마에 관한 배경 설명

가. 미얀마의 정치·경제적 상황 - 군사정권과 자원외교

미얀마연방공화국(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이하 ‘미얀마’라 합니다)은 1962년 네윈 장군이 쿠데타에 성공한 이후 약 50여년간 강력한 군부 세력의 지배 하에 있었습니다. 미얀마의 군사정권은 그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진압하고, 그들의 이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행, 강제이주, 강제노동 등 인권 유린 행위를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참고자료 1. 12면 참조).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2008년 미얀마를 부패지수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11면 참조). 미얀마는 2011. 1. 경에 이르러서야 국회를 소집하고 대통령을 선출하여 형식적으로는 군사 정권에서 탈피하였지만,

여전히 강력한 군부세력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비민주적 관습이 미얀마 전체에 만연해 있습니다(참고자료 3. 1면 참조).

한편 미얀마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적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10위의 규모에 이르는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에 천연가스 등의 자원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유리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미얀마의 군사정권은 ‘자원외교’에 능숙해졌으며, 미얀마의 자원을 주변 강대국들에게 값싸게 처분하는 대가로 군사정권의 재정적인 수입과 정치적인 지지를 보장받아 왔습니다(참고자료 2. 17면 참조). 미얀마의 군사정권은 매년 24억 달러를 천연가스 수출로 벌어들였으며, 이는 미얀마 전체 수출의 약 5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 중 보건 및 교육 등 미얀마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투자된 금액은 미미한 수준입니다(참고자료 2. 11~12면 참조).

나. 자원외교 실시 과정에 있어서의 인권침해

미얀마 군사정권은 자원외교 사업을 위해 자원 개발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고, 파견된 군부 세력은 해당 지역에서 강제 노동, 성폭행, 강제 이주, 토지 몰수 등과 같은 거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얀마 군부 세력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하여 UN과 각국 정부들, 세계의 비영리단체 등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여 왔습니다.

일례로, 미얀마의 자원외교 사업인 동부 버마 파이프라인 참사 사태를 들 수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자료 2. 20~23면 참조).

미얀마의 군사정권은 2000. 11. 야다나 지역부터 시멘트 공장까지 가스를 운송하기 위해 몬 주에 있는 칸 바욱으로부터 카렌 주에 있는 마잉 칼라이까지

180마일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파이프라인 주변의 2,400에이커 상당의 토지가 몰수되었고, 해당 지역 거주민들에게는 소액의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전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주민들은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하여 재목, 덩불을 치우고 도랑을 파고 재료를 운송하는 등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파이프라인 건설 완공 이후에도 파이프라인을 유지하고 보초를 서는 등 거주민들의 강제 노동 동원은 계속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파이프라인 경로에 따라 추가 배치된 미얀마 군부는 지역 주민들을 고문, 살인, 강간 하는 등 빈번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였습니다.

동부 버마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를 관리하였던 Total사와 Unocal사는 미국 및 프랑스 법원에서 미얀마 주민들을 학대한 공범으로 고소당하고 미얀마 주민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또한 위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파이프라인 건설 과정에서 있었던 거주민들의 강제노동을 강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이렇듯 오랫동안 군부에 의한 인권 유린을 경험한 미얀마의 거주민들은 자원 개발 지역에 주둔해 있는 군대에게 강력한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 개발 지역의 거주민들은 군부 및 이와 결탁한 기관의 강압적인 토지 수탈을 경험한 바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주거지역에서 자원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입니다.

더구나 원고들은 미얀마에서도 소수부족에 속하여 오랫동안 정치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군사 정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더욱 심한 경우입니다.

다. 미얀마의 취약한 사법제도

1) 역사적 문제 - 군사정권에 의한 사법부의 기능 무력화

미얀마의 사법부는 군사정권이 독재하는 수십 년 동안, 정의를 추구하는 기관이 아닌 군사정권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기능하며 수많은 미얀마 국민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눈감아 왔습니다. UN 인권이사회는 미얀마 사법부가 “인권과 관련하여 개입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사법적 독립과 정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¹⁾.

미얀마는 1988년 SLORC(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국가법과 질서 회복 위원회)에 의해 전문적인 재판관 제도를 복구하기는 하였으나, 재판관들은 법률의 해석과 선례를 통한 정의 구현의 결정을 내리지 않고, 국가정책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미얀마의 사법부는 3권분립의 한 주체로서의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행정부의 하부기관처럼 운영되었습니다(참고자료 4. 2면 참조).

이는 지금까지도 변화된 바 없습니다. 현재 미얀마의 사법부는 2008년 개정된 헌법에 의하여 구성되고 동일한 법에 의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법체계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법부의 외관은 그럴듯하게 갖추고 있으나 이는 급조된 외형의 이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사법부로서의 독립성과 법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1) UNHRC ‘Human Rights Situations that Require the Council’s Attention,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Tomas Ojea Quintana’ (2009) UN Doc A/HRC/10/19. (“Domestically, Burma’s judiciary is unequipped and unwilling to deal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Judicial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remain nonexistent.”)

2) 구조적 문제 - 행정부의 법관에 대한 임명권

미얀마 헌법 제299항(참고자료 5. 참조)은 미얀마의 최고 재판기관인 연방최고법원(The Supreme Court of The Union)의 법관 및 법원장 임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방최고법원의 법관 및 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목한 후보들 가운데 의회(Pyidaungsu Hluttaw)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때 의회는 후보자가 자격 미달 등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only if it can clearly be proved')를 제외하고는 임명 동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의회의 동의가 강제됩니다. 또한, 대통령이 지목한 군부세력이 의회 의석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방최고법원의 재판관 임명에 있어 형식적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구조입니다.

한편 대법원 이하 주, 지역의 하부 법원장 및 법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상의하여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제안에 의하여 결정되며 대법원장에 의하여 임명됩니다(미얀마 헌법 308항, 참고자료 5. 참조). 보다 낮은 심급의 지역 법관들은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시험 및 연수 등을 거쳐 선발되어, 행정부 공무원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판관들의 임명 구조를 살펴볼 때, 미얀마의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군부 출신 대통령과 군부 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행정부로부터 임명된 재판관들이 행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운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정의 확립 기능을 포기한 사법부의 사례

이와 같은 역사적,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미얀마의 사법부는 군사정권과 군사정권 출신의 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 정부에 편향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미얀마의 군사정권(및 이와 결탁한 기관, 경제주체)은 살인, 강간, 폭행, 소년병, 납치 등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빈번히 자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법원은 중대한 인권범죄에 대하여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낸 적이 없는 것은 물론 여타의 민형사상의 소송에 있어서도 군사정권과 현 정부 측에 편향된 판결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군사정권에 의하여 토지가 몰수된 양곤 근방의 New Dagon 및 Bago 지역, 서부 해안에 위치한 Chaungthar 지역 등에서 이주를 거부한 미얀마 주민들을 기소하고 형벌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지역인 Naypyidaw에서는 몰수된 토지에서 퇴거할 것을 거부한 21명의 주민들을 Naypyidaw시 검찰이 2011년 기소하였고, 사법부는 이 가운데 6명에 대하여는 2012년 3월, 또 다른 3명에 대하여는 2012년 4월에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나머지 주민들은 본인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 두려워 퇴거에 따랐으나 일부는 이후 재정착할 주거지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참고자료 4. 1면 참조).

이외에도 토지가 몰수된 농민들의 피해구제를 도우려는 사람에게 부당한 사법절차를 통해 유죄선고를 내리고 징역형에 처한 사례까지 있습니다(참고자료 6. 참조).

4)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미얀마 사법부의 위와 같은 정권 편향적이고 반인권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군사정권의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시행된 자원개발사업의 사업자인 피고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자신들의 토지 사용권을 빼앗긴 원고들이 미얀마 사법기관을 통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법적인 이 사건 토지사용권 매매계약은 군사정권의 영향력 아래에서 체결된 것으로, 이에 대해 행정부에 종속된 사법부가 법률적으로 타당하고 정의에 부합하는 공정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 경위

가. 피고의 이 사건 사업진행

피고는 2000. 8. 경 MOGE(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 미얀마 석유가스기업)와 벵갈만(Bay of Bengal)에 묻혀있는 수중 천연가스 자원을 조사, 생산 및 조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4면 참조). 이는 미얀마의 슈에가스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슈에가스프로젝트는 벵갈만의 A-1과 A-3광구(이 지역을 현지에선 “슈에(Shwe)”라 하며, 이하 “슈에”라 합니다)에 묻혀있는 천연가스를 수송관을 통해 아라칸주(Arakan State)의 쩍푸(Kyauk Phyu)에서부터 중국 남서부의 난닝(Nanning)까지 보내는 프로젝트입니다(참고자료 3. 3면, 참고자료 2. 2면 각 참조). 피고는 2004년 경부터 슈에의 51%지분을 소유한 주된 소유자이자 운영자입니다(참고자료 3. 3면 참조).

피고는 2008. 6. 23. CNPC(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중국

국립 석유회사)와 슈에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전량을 CNPC에 송출해 팔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4면 참조). 피고는 본 사업을 위하여 육상가스터미널(Onshore Gas Terminal. 이하 ‘OGT’라 합니다) 부지, 육상가스 시설 및 독(jetty), 배수로, ROW(Right of Way, OGT 파이프라인을 따라 이어지는 50미터 폭의 대지), 건설 노동자 캠프, 원료공급지 등이 필요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미얀마 쩡퉈(Kyauk Phyu) 지역 거주민들의 토지사용권을 매수하여야 했습니다. 피고는 영어로 작성된 그들의 ‘토지 수용 정책’²⁾을 공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의 토지사용권매매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대지, 가구, 상점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대우인터내셔널 “LAND ACQUISITION ACTIVITIES” 8면 참조).

- 1) 위치: 미얀마 람리섬(Ramree) 쩡퉈구(Kyauk Phyu Township) 곤세인마을(Gone Chewin Vilage Tract) 부근 토지.
- 2) 총 사업 면적: 91.9 에이커 (371,906.1 제곱미터)
- 3) 사업 시행으로 영향 받은 가정의 총수: 110 가구
 - ROW 지역: 65가구
 - OGT 지역 : 33가구
 - 배수로 지역: 12가구
- 4) 경작하던 작물의 종류: 17가지.
- 5) Jetty area로 인해 영향을 받은 상점의 총 수: 22점

나. 슈에가스개발사업 과정의 토지수탈 문제

미얀마의 군사정권에 의한 거주민의 토지수탈은 만연한 현상이었습니다. 미얀마가 사회주의에서 자본시장경제체제로 변화를 꾀하면서 미얀마의 토지와 토지사용권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됨에 따라 더 많은 농민들이 경작지와 거주지를 잃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를 꾀한 2011년 경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사용권매매계약을 ‘토지수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사인이므로 원고들과 피고간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토지수용이 아니라 ‘계약’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군사정권에 의한 직접적인 토지수탈행위는 감소하였으나 이는 외형적인 변화일 뿐 여전히 군부 소유의 기업 혹은 직·간접적으로 군부와 연관된 정치·경제적 우월주체들에 의하여 수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참고자료 4. 참조).

슈에가스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도 OGT 및 파이프라인 등 관련시설 건설 과정에서 OGT 및 파이프라인 건설 지역 거주민들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문제가 국제사회기구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ERI와 태국에 기반을 둔 Shwe Gas Movement은 미얀마의 슈에가스개발사업에 대한 실태를 보고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콕에 소재한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는 미얀마 법원이 슈에가스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 인근 주민들 약 400여명이 2013. 4. 토지 수탈 문제를 제기하며 시위를 벌이자 시위를 주동한 10명의 주민에 대해 2013. 9. 26.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포럼아시아는 위 성명서에서 슈에가스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및 중국 업체 또한 미얀마 정부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참고자료 8. 166면 참조).

한편 한국에서도 다수의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이 피고가 슈에가스개발사업 과정에서 미얀마 거주민들의 인권 침해 문제에 동참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1 2011. 03. 28.자 프레스안 기사, 갑 제2호증의2 2011. 11. 30.자 공익법센터 어필 기사 각 참조). 공익법센터 어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의하면, 2013. 8. 10.부터 2013. 8. 18.까지 직접 미얀마의 짝푸 및 양곤 지역에서 슈에가스개발사업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피고가 짝푸 주민들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보상정책 및 보상금액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토지사용권 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였습니다(참고자료 8. 163~173면 참조). 또한 피고가 건설한 OGT에서 나온 폐기물, 오수, 진흙이 OGT 주변의 농지를 침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짚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다. 피고의 윤리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피고는 ‘모든 이해관계집단이 공존·공영하는 상생의 경영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모범적이며 이상적인 기업상 구현을 목적(제1조)’으로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 및 현지 채용인에게 적용(제2조)하는 피고의 윤리규정을 자사 홈페이지(<http://www.daewoo.com/kor/company/ethical/rule01.jsp>)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대우인터내셔널 윤리규정 참조).

위 윤리규정 제25조 제1항은 “인간이 가지는 생명·신체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협약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국제거래에 있어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26조 제2항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 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가 자신의 윤리규정을 통해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피고는 사업 진행에 있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한 사업을 지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은 미얀마 군사정권의 자원외교로 인한 사업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자원 개발 지역의 미얀마 거주민들이 군부에 의하여 인권 유린을 당해왔으며 이에 대해 국제적인 비난이 있어 왔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에 침묵하고, 피고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진행한 OGT건설 부지 취득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쩌퉁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은 자신이 규정한 윤리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3. 국제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에 대하여

가. 이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

1) 섭외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 판단 기준 - 법령 및 판례

가) 섭외적 요소를 가지는 민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 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p>국제사법 제2조(국제재판관할)</p> <p>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p> <p>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p>
--

이에 따르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으며, 그러한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일차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나) 한편, 대법원은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 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한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12.05.24. 선고 2009다 22549 판결 등 참조), 실질적 관련성의 판단요소로 “개인의 이익”과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익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 회사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음에 비추어 대한민국에 피고 회사의 재산이 소재하고 있거나 장차 재산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원고들은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원고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이익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참조)”라고 하였습니다. 판결의 집행가능성 및 용이성을 법원의 이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 또한,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는데(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참조), 대법원은 위 판시에서 “국제재판관할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으므로 지리상, 언어상, 통신상의 편의 측면에서 중국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피고 회사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곤란하고, 특히 원고가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여 재판을 청구한 점을 쉽사리 외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의사” 또한 당사자가 대한민국 법원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라) 덧붙여 대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자국의 재판관할권을 부당하게 넓히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지만, 부차적인 사정을 들어 국제재판관할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또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판시하였습니다.

마) 즉, 섭외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국가에 인정되는 것이고,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①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② 개인적 이익과 ③ 법원·국가의 이익, ④ 당사자들의 의사 또한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⑤ 부차적인 사정을 들어 자신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스스로 쉽게 포기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① 우선 이 사건의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5조 제1항은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는 대한민국이므로 위 관할규정에 따라 일응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습니다.

한편, ②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영리는 결국 대한민국 소재 법인인 피고에

게 귀속되는 것으로 개인적 이익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③ 피고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음에 비추어 대한민국에 피고의 재산이 소재하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법원의 이익 측면에서도 판결의 집행이 가능하고 용이한 대한민국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④ 당사자와 대한민국 법원의 실질적 관련성 인정에 있어 원고들이 미얀마 법원이 아닌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한 점 또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얀마의 취약한 사법체도로 인해 원고들이 미얀마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구제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⑤ 대한민국 법원이 부차적인 사정을 들어 원고들에 대한 자신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스스로 쉽게 포기해 버린다면 원고들의 권리 구제를 도외시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재판의 적정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과 대한민국이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됩니다.

나. 이 사건의 준거법에 대하여

1) 준거법 관련 규정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신들의 토지사용권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준거법을 명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갑 제4호증 참조). 이처럼 섭외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국제사법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6조(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 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 ②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2.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
 3. 위임·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
- ③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즉,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며, 국제사법 제26조 제3항은 특별히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과 피고는 토지사용권 매매계약 당시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사용권을 매매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고, 위 토지는 모두 미얀마 쩡퉈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 즉, 미얀마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간의 토지사용권 매매계약에 관한 준거법은 미얀마 법이 됩니다.

Ⅲ. 이 사건 토지사용권매매계약의 무효

1. 이 사건 토지사용권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가. 피고의 토지 사용권 매매 계획의 수립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2009년 3월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미얀마 적푸 지역에서 OGT 및 제반 시설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위한 토지를 얻기 위해 토지사용권자인 원고들로부터 토지사용권을 매수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당시 피고는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원고들의 일부 토지에 임의로 울타리를 쳐 원고들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갑제5호증 참조).

이에 피고는 본격적으로 토지 사용권매매 및 보상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는 2009. 7. 효과적인 토지사용권매매를 위해 ‘토지수용팀’을 구성하였고, 이 팀은 피고의 현지 직원을 포함한 피고측 인사, 미얀마국영석유공사(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 MOGE)의 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등기부처(Land Records Department)의 공무원들과 마을 대표들도 위 ‘토지수용’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대우“LAND ACQUISITION ACTIVITIES" 참조).

한편 피고는 토지사용권 매매 경위, 토지사용권 매매대금의 산정기준, 토지사용권 매매 절차 등이 포함된 위 토지사용권 매매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포장한 홍보물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갑 제1호증 대우인터내셔널, “LAND ACQUISITION ACTIVITIES" 참조). 이에 대해 국제기구인

EarthRights International(ERI)³⁾이 피고에게 영어가 아닌 현지어(원고인 썸퓨 주민들은 다수민족인 버마민족과 달리 아라칸어를 사용함)로 작성된 토지 사용권 매매계획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내놓지 못하였습니다(참고자료 7. 2면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사용권 매매대금 산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아라칸어로 작성된 것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고를 포함한 거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할 것입니다.

나. 설명회 개최

마을평화발전위원회(Villag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VPDC)⁴⁾의 주최로 피고와 미얀마 정부측 인사들은 2009. 7.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설명회에는 모든 주민이 오지는 않았고, 일부 주민만이 참석하였습니다.

위 설명회에서 피고와 미얀마 정부측 인사들은 토지사용권매매의 필요성, 목표와 원칙, 매매절차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 사용권을 영구적으로 매수한다는 사실 및 따라서 이 사건 토지사용권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원고들로서는 영구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잃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갑제5호증 참조).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매매대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토지사용권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토지 사용기간과 매매대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각 인터뷰 동영상 및 녹취록 참조).

3)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환경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 ERI는 피고의 영어로 작성된 토지 수용 정책을 미얀마 지방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얀마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4) 마을평화발전위원회는 당시 미얀마 군사정권의 통치기구인 국가평화발전위원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에서 발탁된 퇴역군인, 행정관료 등 친군부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역 내 농지 경작권 분배권한 및 토지 용도 변경 권한을 독점하는 등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에서 대대손손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사람들로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포함한 각종 계약에 익숙하지 않고, 켄푸 지역은 토지사용권 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아니어서 매매대금 산정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형식적인 정보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낮은 교육수준과 무경험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와 같은 설명은 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자신들이 토지 사용권을 영구적으로 잃는다는 사실 및 토지사용권 매도의 대가로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각 인터뷰 동영상 및 녹취록 참조).

그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계획만 전달했을 뿐 원고들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주민들에게 부실한 설명을 한 뒤 주민들로부터 “1. 마을 대표들과 관련자들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토지와 작물 보상에 관련한 그룹이 토지와 작물 보상 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2. 토지와 작물 보상에 관한 원칙을 이해하였다, 3. 위 원칙에 동의한다, 4. 토지와 작물에 대한 보상이 곧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였다, 5. 보상 전후로 해당 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6. 상기 사실과 관련한 계약은 마을 대표 앞에서 확정된다”는 내용의 승낙서(Acceptance form)에 서명을 받았습니다(갑 제8호증 승낙서 참조).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원고들을 비롯한 주민들은 피고에게 2-3년간 토지 사용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영구적으로 잃는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 승낙서에도 사용기간 및 매매대금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 피고의 일방적인 현황조사

피고는 2009.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원고들의 토지에서 어떤 작물이 생산되는지 및 그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등 토지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지어 마을평화발전위원회측 인사도 이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갑 제6호증의 1, 2 마을평화발전위원회 위원 Kwon Chia Mang 인터뷰 동영상 및 녹취록 참조). 즉, 원고들은 당시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작물 및 그 생산량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그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라. 토지사용권매매대금 산정 기준 및 절차의 확정

피고는 2009. 12. 내부적으로 보상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측 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토지사용권 매매로 인하여 손실되는 작물에 대한 ‘보상액’과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분류하여 그 산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식은 “총 보상액 = ‘보상율’ × ‘토지유형(지목)’ × ‘위치’, × ‘임대유형’”입니다. 피고는 이때 ‘토지유형’은 보통, 중간, 최고로 유형을 분류하여 각 0.50, 0.75, 1.00으로 산정하였고, ‘위치’는 도시나 마을과 가까운 경우 1.00, 중간 거리이면 0.75, 먼 거리이면 0.50으로 산정하였으며, 임대유형은 무허가 임대이면 0.70,登記된 임대이면 1.0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가장 중요한 항목인 ‘보상율’에 대해서는 농지와 정원지로 분류만 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갑 제1호증 대우인터내셔널 “LAND ACQUISITION ACTIVITIES” 참조).

그리고 작물에 대한 보상액 산정식은 “총 보상액 = ‘보상율’ × ‘생산(가능)성’ × ‘작물손실’ × ‘수목의 성숙도’ × ‘보상기간’”입니다. 피고는 이때 ‘생산성’은 각 마을의 최대 비율 및 최대 생산량을 채택했고, 마을의 자체적인 보상비율을 적용했고, ‘작물손실’은 OGT 건설로 인하여 잃게 될 토지의 크기와 수목의 수에 따라 산정했으며, ‘생산성’은 중간값을 0.40으로, 최대치를 1.00으로 하였으며, ‘보상기간’은 영구적인 토지사용권매매의 경우 5년, 일시적인 토지사용권매매의 경우에는 3년으로 산정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대우인터내셔널 “LAND ACQUISITION ACTIVITIES” 참조). 하지만 여기서도 피고는 정작 가장 중요한 항목인 ‘보상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마.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

1) 지나치게 부족한 매매대금

피고는 앞서 피고가 임의로 만든 산정식에 따라 원고들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와 5년어치의 경작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피고의 매매대금 산정식에 의하면, 금액의 확정 기준에는 작물의 종류, 농지면적 등의 요소가 고려되었으나, 토지 이용에 대한 보상 이외에도 OGT 및 부속시설 등의 건설로 당연히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는 보상에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손해의 예로는 원고들의 노력과 자금을 투입하여 축조한 다수의 보(저수지) 상실, 일정량의 등유를 생산할 수 있는 토지에서 등유 생산을 못하게 됨에 따른 손해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OGT를 건설하여 25~30년간 가스를 수출할 계획인바(갑 제9호증 뉴스기사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의 토지사용기간에 비추어 봐도 피고의 토지 이용에 대한 보상액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금

액입니다. 피고가 지급한 보상액은 피고에게 토지사용권을 양도한 원고들이 OGT 건설로 인하여 급등한 농지가격으로 인해 대체농지를 마련하여 계속 농사를 짓거나, 농업 이외의 새로운 생계수단을 모색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각 인터뷰 동영상 및 녹취록 참조).

실제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사용권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토지를 잃은 뒤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가 되었는데, 원고들이 버는 돈은 하루에 2000~3000 짜트⁵⁾에 불과합니다. 이는 원고들이 농사를 지을 때의 수입보다 훨씬 낮은 금액입니다.

2) 원고들의 매매대금 수령 경위

원고들은 사전에 자신들의 받게 될 보상금의 액수를 알지 못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협의 없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매매대금을 수령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피고는 은행에서 원고들에게 돈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원고들로 하여금 무조건 돈을 지급받도록 하였습니다(갑 제6, 7호증 각 인터뷰 동영상 및 녹취록 참조).

마. 이 사건 토지사용권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원고들이 토지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 전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토지 사용권, 농작물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토지와 농작물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피고의 통지 후 5일 안으로 토지를 비운다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합니다)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평화발전위원회와 미얀마국영석유공사는 위 계약서에 증인으로 서명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매매계약서

5) 1짜트의 환율은 2015. 11. 3. 기준 시가로 위화 0.888102원에 해당합니다.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10. 3. 4.경 위 계약서에 원고들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① 원고들중 일부는 영구적인 토지사용권 매매라는 점과 계약의 효과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가 계약서 중 당사자 서명란만 제시한 채, 서명을 강요당하였고, 심지어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토지는 피고가 가져갈 것이라고 하여 서명할 수밖에 없었으며, ② 일부 원고들이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가 계약서의 당사자 서명란에 서명을 위조하기까지 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각 인터뷰 동영상 및 녹취록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계약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이를 검토할 수도 없었으며, 계약의 주요한 내용도 알지 못한 채 서명을 강요당하였고, 심지어 계약서가 어떠한 언어로 작성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원고 Win Naing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음에도 서명란에 Win Naing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는 원고 Win Naing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보입니다(갑 제4호증 매매계약서, 갑 제7호증의 1, 2 원고 Win Naing의 인터뷰 동영상 및 녹취록 참조).

또한 원고들은 계약서를 비롯하여 일체의 계약내용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교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약 체결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본인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습니다(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각 인터뷰 동영상 및 녹취록 참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는 피고에게 이러한 점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피고는 2014. 9.경 주민들을 불러모아 이 사건 토지사용권매매계약서 사본을 주겠다고 하였고, 일부 주민들이 자신의 계약서를 받아옴으로써 이 사건

토지사용권매매계약의 실제적 내용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서에 증인으로 서명한 마을평화발전위원회 위원 역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과정을 목격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를 제공받지도 못했습니다. 마을평화발전위원회 위원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의 증인 서명란만을 제공받아 증인란에 서명했을 뿐입니다. 마을평화발전위원회 위원이었던 Kwon Ming Chia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증인인 마을평화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사건 계약서 중 증인 서명란과 당사자 서명란만 확인하고 증인란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을 비롯한 주민들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채 서명만 했을 가능성이 높고, Kwon Ming Chia 역시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의 증인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사용권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갑 제6호증의 1, 2 마을평화발전위원회 위원 Kwon Ming Chia).

즉 원고들을 비롯한 주민들은 계약 내용을 모른 채 서명만 한 것이고, 계약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여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증인 역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사이에 적법하게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피고에 의해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보관되어 온 점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2. 근거 법률(미얀마법)

미얀마 계약법(The Contract Act, 1872)에는 계약의 의미와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0. All agreements are contracts if they are made by the free consent of parties competent to contract, for a lawful consideration and with a lawful object, and are not hereby expressly declared to be void.

(번역)

10. 협약이란 합법적인 대상에 대하여 계약능력이 있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체결되고, 명백히 무효라고 공표되지 않는 계약을 의미한다.

"Consent" defined

13. Two or more persons are said to consent when they agree upon the same thing in the same sense.

(번역)

“합의”란,

13. 두명 이상의 사람이 같은 것에 대하여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Free consent" defined

14. Consent is said to be free when it is not caused by-

(1) coercion, as defined in section 15, or

(2) undue influence, as defined in section 16, or

(3) fraud, as defined in section 17, or

(4) misrepresentation, as defined in section 18, or

(5) mistak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s 20, 21 and 22.

Consent is said to be so caused when it would not have been given but for the existence of such coercion, undue influence, fraud, misrepresentation or mistake.

(번역)

“자유로운 합의”란

14. 그 합의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1) 제15조상 ‘강요’에 의한 것, 또는
- (2) 제16조상 ‘부당한 위압’에 의한 것, 또는
- (3) 제17조상 ‘사기’에 의한 것, 또는
- (4) 제18조상 ‘부실표기’에 의한 것, 또는
- (5)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실수’에 의한 것

합의는 강요, 부당한 위압, 사기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Coercion" defined

15. "Coercion" is the committing, or threatening to commit, any act forbidden by the Penal Code or the unlawful detaining or threatening to detain, any property, to the prejudice of any person whatever, with the intention of causing any person to enter into an agreement.

(번역)

“강요”란

15.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의하게 만들 의도로, 형법상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불법 구금 또는 감금·협박에 의하여 재산을 박탈하는 등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것에 따르거나 따르도록 위협하는 것을 뜻한다.

"Undue influence" defined

16.(1) A contract is said to be induced by "undue influence" where the relations subsisting between the parties are such that one of the parties is in a position to dominate the will of the other and uses that position to obtain an unfair advantage over the other.

(2) In particular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principle, a person is deemed to be in a position to dominate the will of another—

(a) where he holds a real or apparent authority over the other or where he stands in a fiduciary relation to the other; or

(b) where he makes a contract with a person whose mental capacity is temporarily or permanently affected by reason of age, illness, or mental or bodily distress.

(3) Where a person who is in a position to dominate the will of another, enters into a contract with him, and the transaction appears, on the face of it or on the evidence adduced, to be unconscionable, the burden of proving that such contract was not induced by undue influence shall lie upon the person in a position to dominate the will of the other.

(번역)

“부당한 위압”에 의한 계약이란,

16. (1) 거래 당사자 일방이 타방 당사자의 의사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고, 불공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다른 사람의 의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a) 당사자 일방이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실제로 또는 명백한 권한을 갖고 있거나, 신뢰관계(fiduciary relation)에 있는 경우 또는

(b) 나이, 질병, 정신적·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정신적 능력이 일시적, 영구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의 의사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3) 상대방의 의사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당사자가 그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거래가 표면적으로 또는 제시된 증거에 의하여 부도덕하게 보이는 경우 이 때 그 계약이 부당한 위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상대방의 의지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

19. When consent to an agreement is caused by coercion, fraud or misrepresentation, the agreement is a contract voidable at the option of the party whose consent was so caused.

A party to a contract, whose consent was caused by fraud or misrepresentation, may, if he thinks fit, insist that the contract shall be performed, and that he shall be put in the position in which he would have been if the representations made had been true

(번역)

19. 협약(계약)에 대한 합의가 강요, 사기, 착오, 부실표기에 의한 것인 경우 강요, 사기, 착오, 부실표기에 의해 합의한 자가 그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만약 그 계약이 자신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위 동의자는 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강요, 사기, 부실표기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주장할 수도 있다.

19A. When consent to an agreement is caused by undue influence, the agreement is a contract voidable at the option of the party whose consent was so caused.

Any such contract may be set aside either absolutely or, if the party who was entitled to avoid it has received any benefit thereunder, up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o the Court may seem just.

(번역)

부당한 위압에 의하여 동의가 행해진 경우, 동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거나,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그 위압을 당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것이 있다면, 부당한 부분만 무효이다.

65. When an agreement is discovered to be void, or when a contract becomes void, any person who has received any advantage under such agreement or contract is bound to restore it, or to make compensation for it to the person from whom he received it.

(번역)

계약이 무효라고 판명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양 당사자는 그 계약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위 미얀마 계약법 조문에 따르면, “계약”이란 합법적인 대가를 위해 합법적인 대상에 대하여 계약능력이 있는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체결되고 명백히 무효라고 공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제10조). “합의”란,

두명 이상의 사람이 같은 것에 대하여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서 동의하는 것을 뜻하고(제13조), 그 계약이 ① ‘강요’에 의한 것, ② ‘부당한 위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자유로운 합의”가 아닙니다(제14조).

여기서 “강요”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의하게 만들 의도로, 형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불법 구금 또는 감금·협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하는 등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것에 따르거나 따르도록 위협하는 것을 뜻합니다(제15조).

그리고 “부당한 위압”에 의한 계약이란, ① 거래 당사자 일방이 타방 당사자의 의사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고, 불공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② 특히 당사자 일방이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실제로 또는 명백한 권한을 갖고 있거나, 신뢰관계(fiduciary relation)에 있는 경우 또는 나이, 질병, 정신적·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정신적 능력이 일시적, 영구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의 의사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사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때 그 계약이 부당한 위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상대방의 의지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제16조).

위와 같이 어떤 계약에 대한 합의가 강요, 부당한 위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19조A). 그리고 이 경우 그 계약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원상회복을 하거나 보상하여야 합니다(제65조).

3. 이 사건 토지사용권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계약의 불성립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거나, 매매대금 등 계약의 주된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서명을 강요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평화발전위원회 위원은 실제로 이 사건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사용권 매매계약 체결과정을 목격하지도 않은 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서의 증인란만 제공받아 이 사건 계약서에 증인으로 서명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각 인터뷰 동영상 및 녹취록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은 미얀마 계약법에 따른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여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증인 역시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를 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서 동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계약에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강요, 부당한 위압에 의한 것으로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칙적으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토지를 반환하여야 하고, 2010. 3. 16.경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원고들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었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피고는 짝퉁 지역에서 OGT 사업을 이미 마쳐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원고들이 2010. 3. 16.경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 및 향후 영구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무효

1) 이 사건 계약은 강요에 의해 체결된 계약으로 무효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대대손손 경작해온 토지의 사용권을 잃게 되었는데, 피고가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어서 대체농지를 마련하여 계속 농사를 짓거나, 농업 이외의 새로운 생계수단을 모색하기에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하게 된 이유는 피고 및 마을평화발전위원회가 이 사건 계약 체결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채 강제로 토지사용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며 원고들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마을평화발전위원회는 퇴역 군인, 행정 관료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원고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강제 노동, 성폭행, 강제 이주, 토지 몰수 등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해왔고, 이에 지역 주민들은 국가시책이나 관료들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을 극히 두려워합니다. 원고들도 마찬가지로 마을평화발전위원회의 압박 하에 심리적 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사용권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는 미얀마 계약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의하게 만들 의도로 협박하여 재산권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은 미얀마 계약법 제19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2) 이 사건 계약은 부당한 위압에 의해 체결된 계약으로 무효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마을평화발전위원회의 대표인 미얀마국영석유공사 대표와 함께 증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을평화발전위원회는 국가평화발전위원회에 의해 발탁된 친군부 주민들로 구성되고 지역 내 농지 경작권 분배권한 및 토지 용도 변경 권한을 독점하는 등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Human Rights Foundation of Monland(이하 ‘HURFOM’이라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마을평화발전위원회는 피고 외에 다른 외국 기업들이 토지사용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늘 개입해왔습니다. 위 조사에 따르면, MaeGro, NiDon, KaDon 지역의 주민들은 Zaykabar Co. Ltd., June Industry와 같은 기업들과의 토지사용권매매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기업측이 제시한 매매대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토지가 보상금 없이 강제 몰수될 것이라고 협박을 자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참고자료 9. 68면 참조). 특히 토지 사용권매매계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는 주민들을 대신하여 마을평화발전위원회가 대신 동의서에 사인을 하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참고자료 9. 71면 참조). 이를 통해 이 사건 계약과 같이 기업이 토지 사용권을 매수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업과 마을평화발전위원회 사이에 결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 역시 마을평화발전위원회의 압력을 받고 두려운 마음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각 인터뷰 동영상 및 녹취록 참조).

그리고 미얀마국영석유공사는 2009. 3. 16.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하여 2010. 3. 21.까지 해당 토지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부하였고, 그 사본은 Village, township, 지역평화발전위원회에도 배

부되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사인 간의 거래인데 재판 등의 절차 없이 국가기관이 이에 관하여 퇴거명령을 하였다는 것은 피고가 원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얀마 정부기관의 지원과 원조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국제기구인 ERI 또한 2010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얀마 주민들이 피고를 국가기관과 같은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추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결국, 피고는 미얀마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원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특히 마을평화발전위원회를 앞장세워 원고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피고는 정부의 협력과 거대한 자본력으로써 원고들의 의사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 지위를 이용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원고들의 토지사용권을 매수하여 불공정한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이는 미얀마 계약법 제16조에서 말하는 “거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은 미얀마 계약법 제19조 A에 따라 무효입니다.

3)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토지사용권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명되었으므로 미얀마 계약법 제65조에 따라 양 당사자는 그 계약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피고는 짝푸 지역에서 OGT 사업을 이미 마쳐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3. 16.경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 및 향후 영구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에 원고들은 현재 정확한 손해액

을 산정하기 어려워, 향후 손해액이 확정되면 청구취지를 확정할 예정이며, 손해액 중 일부 청구로서 원고 1인당 11,000,000원을 청구합니다.

IV. 결 어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아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원고들은 강요, 부당한 위압에 의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0. 3. 16.경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 및 향후 영구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액은 변론의 진행과정에서 특정하기로 하고, 우선 피고의 손해액 중 일부로 원고들에게 각 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대우인터내셔널, “LAND ACQUISITION
ACTIVITIES”
1. 갑 제2호증의 1 2011. 03. 28.자 프레시안 기사
1. 갑 제2호증의 2 2011. 11. 30.자 공익법센터 어필 기사
1. 갑 제3호증 대우인터내셔널 윤리규정
1. 갑 제4호증 매매계약서
1. 갑 제5호증의1 원고 Daw Khin Kyi 인터뷰 동영상
1. 갑 제5호증의2 원고 Daw Khin Kyi 인터뷰 녹취록
1. 갑 제6호증의1 마을평화발전위원회 위원 Kwon Chia Mang 인터뷰 동
영상
1. 갑 제6호증의2 마을평화발전위원회 위원 Kwon Chia Mang 인터뷰 녹
취록
1. 갑 제7호증의1 원고 Win Naing 인터뷰 동영상
1. 갑 제7호증의2 원고 Win Naing 인터뷰 녹취록
1. 갑 제8호증 승낙서
1. 갑 제9호증 뉴스기사

참 고 자 료

1. 참고자료 1 <Shwe Gas Movement(SGM)>(September 2011), “S
OLD OUT; Launch of China pipeline project unlea
shes abuse across Burma”, <<http://www.shwe.org/>
(2015. 10. 29. 확인)>, (번역본 첨부)

1. 참고자료 2. <Shwe Gas Movement(SGM)>(September 2009), "Corridor of Power: China's Trans-Burma Oil and Gas Pipelines", <<http://www.shwe.org/>> (2015. 10. 29. 확인)>, (번역본 첨부)
1. 참고자료 3. <Earthrights International(ERI)>(March 2011), "The Burma-China Pipelines: Human Rights Violations, Applicable Law, and Revenue Secrecy", <<http://www.earthrights.org>> (2015. 10. 29. 확인)>
1. 참고자료 4.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June 2012), "MYANMAR: Myanmar at risk of land-grabbing epidemic", <<http://www.humanrights.asia/news/alrc-news/human-rights-council/hrc20/ALRC-CWS-20-03-2012/?searchterm=land%20grabbing%20epidemic>> (2015. 10. 28. 확인)>
1. 참고자료 5.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2008), §299~301,308~310
1. 참고자료 6.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February 2009), "BURMA: Man jailed over footage of army-confiscated farmlands", <<http://www.humanrights.asia/news/urgent-appeals/AHRC-UAC-009-2009/?searchterm=Natmauk,%20Magwe>> (2015. 10. 28. 확인)>

1. 참고자료 7. <Earthrights International(ERI)>(April 2013), “There is no benefit, they destroyed our farmland”, <http://www.earthrights.org/(2015. 10. 27 확인)>, (번역본 첨부)
1. 참고자료 8. 국가인권위원회(2013. 10.),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1. 참고자료 9. Human Rights Foundation of Monland-Burma(2013), Disputed Territory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입증방법 | 각 1통 |
| 2. 위 참고자료 | 각 1통 |
|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1통 |
| 4. 송달료납부서 | 1통 |
| 5.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 1통 |
| 6. 소장 부분 | 1통 |

2016. 3. .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박진석

박주민

김철호

양홍석

김종우

곽경란

김소리

이연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 별 지 -

원고 명부

1. 원 나잉
마라 섬, 레이그머 촌(村)
2. 마우 웨이
콘촌 촌(村), 짝퉼 시
3. 더 라아 윙킨
콘촌 촌(村), 짝퉼 시
4. 우 킨마우 민트
콘촌 촌(村), 인지나
5. 더 킨 찌
마라 섬, 짝퉼 시
6. 킨 킨 째
콘촌 촌(村), 세이뽀케이
7. 더 메이 룬
마라 섬, 짝퉼 시
8. 우 웨이 툃 카인
마라 섬, 짝퉼 시
9. 우 툃 소
마라 섬

10. 마우 썬 따우
레이그머, 마라 섬
11. 마누
마라 섬
12. 우 세인 재이
마라 섬
13. 더 라아 온 메이
마라 섬
14. 킨 인 인 떠
마라 섬
15. 세인 라아 퓨
레이그머, 마라 섬 촌(村)
16. 우영 서 뿌
온따운, 온떠진 촌(村)
17. 마우 왕 나인
레이그머, 마라 섬 촌(村)
18. 우 마우 포우 조
콘촌 촌(村), 짝퓨 시
19. 더 노에 미야인 마
레이그머, 마라 섬 촌(村)